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30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6일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현대캐피탈(주)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2.1.25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- 정보주체 컨설팅
- 금융상품 광고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6항1호, 동 시행령
제11조의2제4항1호